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2012. 08.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2. 6.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야간 영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가 일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우리 시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 명령에 재량권을 갖도록 한 반면, 조례에는 지자체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휴업일을 의무 규정했다는 점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내용 일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의 “농수산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제외대상 점포에서는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상생 발전에 필요하면 시장이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토요일·일요일·장날(5·10일장) 중에서 1일 이상 2일 이내로 정하되, 설·추석 명절 연휴와 의무 휴업일이 겹치면 해당점포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업체 간 평등 원칙의 침해 소지가 있어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예외규정을 삭제함.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

다. 의견 수렴 규정 신설(제15조의3)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고, 최종 결정사항은 시민에게 공고하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부

다. 합의 : 부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충청북도 권고안과 고문변호사 의견 반영

- 의무휴업일 : 당초 2일 이내에서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

- 협의회 의견 수렴 규정 신설(제15조의3)

- 조례시행일 변경 : 공포일 → 공포일부터 30일 후

- 제15조의2의 단서에서 농수산물의 정의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명확하게 하고,
제외대상 점포에서는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와”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유하기”를 “누리기”로,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통산업 발전”으로 한다.

제5조 중 “지속 가능하게”를 “지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선진화 및”을 “선진화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립 및”을 “확립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을 “수립할 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을 “대형유통기업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을 “대형유통기업과”로, “영업실태 및”을 “영업실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에”를 “표준화·정보화·공동화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을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현황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8조제3항제2호 중 “지역 내”를 “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그 직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 및”을 “기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택 및”을 “채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효율화 및”을 “효율화,”로, “교육 및”을 “교육,”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매 및”을 “구매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실시”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8호까지에 규정된”을 “제8호까지”로,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을 “촉진과 전통시장이나”로, “협력 및 지원”을 “협력 ·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협의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협의회 운영 또는”을 “협의회의 운영이나”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한 경우에는”을 “변경하였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위치 ·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사유 ·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변경과 관련한 도서의 열람 방법

제12조제3항제4호 중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전통시장 · 전통상점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통시장 또는”을 “전통시장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민 및”을 “시민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변경등록(점포 소재지를 변경할 때만 해당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첨부서류”를 “붙임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를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변경등록할 때에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를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않는 경우”를 “않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창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5조제1항 중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를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변경등록할 때 시장은”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전통시장·전통상점가”로, “조건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을 “조건 등을 붙일 때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으로, “시민 및”을 “시민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립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를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로, “충주시 내”를 “시”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를 “「유통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로,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으로,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를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되, 제외대상 점포는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제15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전 0시 ~ 오전 8시로 하되, 시장은 상생발전에 필요하면 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되, 의무휴업일이 설날(음력 1월 1일) · 추석 연휴와 겹쳐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는 1개월 전에 제1호서식(의무휴업일 변경신청서)에 따라 의무휴업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요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토요일
2. 일요일
3. 전통시장 장날(5 · 10일장)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의견 수렴 등)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사항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필요성
2. 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중소상인 입장 현황
3. 시민, 상인, 대규모점포 등의 의견
4. 대규모점포 등의 현재 영업시간 등

제16조의 제목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을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충주시 전통시장 및”을 “시 전통시장과”로,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및”을 “범위와”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의무 휴업일			
변경사유			
<p>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의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휴업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p>충주시장 귀하</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u>지속 가능하게</u>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 ----- <u>지속</u> ----- ----- ----- -----.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u>추진계획</u> (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u>추진계획</u> -----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u>선진화</u>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1. ----- <u>선진화와</u>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 거래 질서의 <u>확립</u>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6. ----- ----- <u>확립과</u> -----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u>수립하고</u>	③ ----- <u>수립할</u>

현 행	개 정 안
<p><u>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충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u>때에</u> ----- ----- ----- ----- -----. ----- <u>변경</u> <u>할</u> -----.</p>
<p>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u> 2. <u>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u> 3. <u>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u> 4. <u>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입환경에 관한 사항</u> 	<p>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대형유통기업과</u> ----- -----</p> <p>2. <u>대형유통기업과</u> ----- ----- <u>영업실태,</u> ----- -----</p> <p>3. ----- ----- <u>표준화·정보화·</u> <u>공동화를</u> ----- -----</p> <p>4. <u>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현</u> <u>황과</u> -----</p>
<p>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 ② (생 략)</p> <p>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현 행	개 정 안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1. 시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 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 ----- ----- ----- ----- 인정하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총괄하며 ----- ----- ----- 직무-----.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 ----- 있으며,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⑥ ----- 운영에 ----- ----- -----.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제10조(협의회의 업무) ----- -----

현 행	개 정 안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기능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 채택과 ----- -----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u>효율화</u>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 ----- ----- <u>효율화</u> , ----- <u>교육</u> , -----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 ----- <u>구매와</u> ----- -----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 ----- <u>시행</u>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 <u>따라</u>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 <u>제8호까지</u> ----- ----- <u>촉진과</u> <u>전통시장이나</u> ----- ----- <u>협력·지원</u> -----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	제11조(협의회 지원) ----- <u>협</u> <u>의회의 운영이나</u> -----

현 행	개 정 안
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범위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 ----- ----- 인정하면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변경 하려면 -----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 ----- 변경 하였으면 ----- ----- -----.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위치 및 면적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위치 ·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사유 및 목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사유 ·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변경과 관련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	4. -----

현 행	개 정 안
과 <u>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u> 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u>전통시장 · 전통상점가</u> -----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u>제11조제1항</u> 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 ----- <u>제12조제1항</u> ----- ----- -----.
1. 지정 · 변경대상이 되는 <u>전통</u> <u>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u> <u>적 · 전통적 가치</u>	1. ----- <u>전통</u> <u>시장이나</u>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시민 및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u> <u>미치는 파급효과</u>	4. <u>시민과</u> ----- -----
<u>제4장 대규모점포 및</u> <u>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u>	<u>제4장 대규모점포와</u> <u>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u>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u>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u> <u>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u> <u>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u> <u>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 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 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u>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u> <u>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나</u> <u>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u> <u>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 변경등록(점포 소재지를 변경 할 때만 해당한다)하려는 자(전 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해당하면 ----- -----.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 ----- 않을 때
2. 충주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충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불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불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제14 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변경등록할 때 시장은 ----- ----- 전통시장·전통상점가----- ----- ----- ----- 조건 등----- -----. ② ----- 조건 등을 불일 때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하면 ----- ----- ----- 시민과 ----- ----- -----.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현 행	개 정 안
	<p><u>조정할 수 있다.</u></p> <p><u>② (생 략)</u></p> <p><u><신 설></u></p>
	<p><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p> <p><u>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휴업일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되, 의무휴업일이 설날(음력 1월 1일) · 추석 연휴와 겹쳐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는 1개월 전에 제1호 서식(의무휴업일 변경신청서)에 따라 의무휴업일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요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u></p> <p><u>1. 토요일</u></p> <p><u>2. 일요일</u></p> <p><u>3. 전통시장 장날(5·10일장)</u></p>
<u><신 설></u>	<p><u>제15조의3(의견 수렴 등) 제15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 사항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u></p> <p><u>1.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필요성</u></p> <p><u>2. 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중소상인 입장 현황</u></p> <p><u>3. 시민, 상인, 대규모점포 등의 의견</u></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u>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u>) ① 시장은 <u>충주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u>시행규칙</u>) 이 조례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4. 대규모점포 등의 현재 영업시간 등</u></p> <p>제16조(<u>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과 지원</u>) ① ----- 시 전통시장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p> <p>② ----- -<u>범위와</u> ----- -----.</p> <p>제17조(<u>시행규칙</u>) ----- <u>시행에</u> ----- -----.</p>

관계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목과류 :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3] 식품공전 (총칙 2. 용어의 정의)

29)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 절차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85호)

제4조(의견제출 기한) 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